

第二次定期總會會訊錄

1968. 4. 27. (土)

# 本月定期總會會議錄梗概

日時 1968. 4. 27 (土) 14.00時

場所 門會連記工務部新

(午後 2.30 開會)

司會 姜駿遠 副會告

韓秀 代理理事

進行 金永善 理事

1. 開會宣言

2. 國民禮禮

3. 會告人事

姜駿遠 副會告의 會告을 代理하인 人事

4. 來賓祝辭

劉龍環 連記課告의 祝辭

5. 成算報告

會員總數 15名中 本月定期總會決議의 依據  
資格停止된 會員을 院하면 95名中 確히 55名  
出席이므로 成算 되었다고 金永善 理事의 報告.



解明이 이의后 決算承認.

9. 68年度東京計画書 및 予算案承認.

東京部理事 津田俊二 68年度東京計画의 說明에  
關한 處理 津田俊二의 予算案에 대한 說明 (神印物参照)  
의 이의后 各議員 李東一 會黨의 部別의 人若干의  
贊成이 이의后 原案대로 通過.

10. 定款改正案審議.

岡大煥 宣傳部長의 呈示의 定款改正內容에 대한  
說明 (神印物参照) 이의后 滿場一致로 通過.

11. 資格審査 및 技術檢定規定의 承認.

職有永留資格審査委員會의 資格審査 및 技術檢定規定의  
內容에 대한 說明 (神印物参照) 후 이의后 各議員  
鄭源道, 柳聖仁, 田豐福, 金基英, 崔龍夏, 金成禹,  
李康覽, 李東一, 和昌茂 會黨의 原案 附則  
別表 1. 에 대한 意見의 提示가 이의后  
2中 崔龍夏, 金基英 會黨의 意見의 原案대로 承認,  
하되 經過程序으로 "修正會黨中 5并以上 10家 以上의  
公認 檢定 机关 登記業務의 從事에 關한 事項을 審査한

附別 別表 1 의 1 級을 2 級으로 統制稅稅을 抑入  
키로 하고 原案대로 決定함.

12. 稅務改革

名譽會長の 李孝祥 監事長 會長の 李源 副會長  
은 諸君一致로 再推戴하리 指導委員의 副會長  
理事 監事의 人選은 各該式에서 人式으로 構成  
되리 幹事委員會에서 人選하리 하여 이 幹事委員會  
에서 各時向 協助하리 함.

指導委員의 姜鎔遠 黃秉秀

副會長의 張基泰 李東輝

理事의 吳仁榮 金海成 金永燾 鄭鍾烈  
柳智永 李龍沐 李龍賢 宋傳文  
鄭東春 鄭奉永 梁源龍 金龍植

監事의 金仁亨 高在勳 金基榮을 人選  
하리 總會에서 各 班의 外任을 選出  
하리 함.

( 附 8 15 南 會 )

第2回 定期總會會議錄

1969年 12月 30日(火)

社 法 團 人 大 韓 速 記 協 會

# 會 順

1. 開 會
2. 國 民 儀 禮
3. 會 長 人 事
4. 來 賓 祝 辭
5. 成 員 報 告
6. 前 會 會 議 錄 通 過
7. 會 務 報 告
8. 1969年 度 決 算 承 認 與 監 查 報 告
9. 1970年 度 事 業 計 劃 書 與 予 算 案 承 認
10. 支 部 設 置 承 認 件
11. 任 員 補 選
12. 其 他
13. 閉 會

1. 開催通知日字 : 1969年 12月 24日
2. 開催日字 : 1969年 12月 30日
3. 開催場所 : 國會速記士養成所
4. 出席會員數 : 在籍 156人  
出席 29人
5. 司會者姓名 : 副會長 張基泰
6. 進行 : 總務理事 柳智永
7. 開會宣言 : (午前 10時 30分 開會)  
柳智永 總務理事 로부터 開會宣言을 하였다.

## 8. 國民儀禮

## 9. 會長人事

李源万 會長의 有故 不參으로 張基泰 副會長이 政府로부터 財政的인 支援를 받은 것은 70年代에는 다른 會員各者의 分별로 協會를 빛내도록 힘써달라는 것 外 會長의 辭任하게 됨을 設상히 여긴다는 要旨의 人事가 있었다.

## 10. 來賓祝辭

裴永鎭 國會事務總長을 代理하여 河在鳩 國會事務處 議事局長이 祝辭를 함.

11. 成員報告 <sup>三ノノ</sup> 柳智永 1968

柳智永 總務理事로부터 在籍會員 166名中 29名이  
出席하여 成員이 되었음을 報告함.

12. 前回會談錄通過

柳智永 總務理事로부터 前次總會會談錄朗誦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司會가 異議 有否를 會員들에게 同談하여  
全員 異議 없었기 하여 通過 됨.

13. 會務報告

<sup>會任</sup> 鄭源道 理事長으로부터 別紙 (本回定期總會資料參照)  
를 附하여 會務報告를 하다.

14. 1969年度決算承認 및 監査報告

柳智永 總務理事로부터 1969年度 決算(別紙)報告와  
金仁寧 監査로부터 監査報告가 있었음  
이에 따라서 李東一 會員이 月會費 徵收 문제에 대해서  
國會 外部 會員의 納付 実績이 나쁜데 特別 任職陣에 있는  
사람까지 納付치 않는 理由와 對策을 묻고 空 速記 技能  
資格証의 支給이 늦은데에 대한 質疑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答弁으로 柳智永 總務理事가 月會費 徵收에 있어서 外部  
會員에 대해서는 溢額이 있다는 것과 任職陣으로 부터는

결재리 徵收하였다는 答弁이 있었고 그중에 補助金關係로  
다른 事宗의 不振 徵收을 理解 可할 化는 要旨의 答弁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議事 進行으로 申世革 會員이 任員은 끼리한 많은 會員이  
會費를 안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앞으로 이런 會員들은 定款의  
規程에 의해서 應分の 措置를 하도록 하고 1969年度 決算承認을  
해주는 勸議에 대하여 全會員 贊成으로 通過 됨.

### 15. 1970年度 事原計劃書 및 予算案承認

全海成 理事로부터 1970年度 事原計劃 및 予算案에 대해서  
別紙(第2回 定期 總會資料)와 같은 報告가 發되었음.

이에 대해서 金敬萬 會員 金永春 會員等이 70年度 事原計劃의 優先  
順位와 實踐 可能性 程度를 質問 했는데 그 答弁으로 鄭源道  
理事長으로부터 事原計劃은 全部 實踐 하도록 努力 하겠다 것과  
協會 收入에 따라 調節 환수도 있다는 要旨의 答弁이 있었고  
宋基結 會員이 議事 進行으로 予算을 通過 시키되 新任 理事陣의  
實質的인 予算 ~~안건~~ <sup>편성은</sup> 全會員 에게 알려주는 條件으로 ~~하자는~~ <sup>通過</sup> 勸議에  
대해서 司會가 異議 手紙를 묻자 全會員 贊成하여 通過 됨

### 16. 支部設置承認의 件

支部設置에 있어서 鄭源道 理事長이 釜山 大邱 大田 光州 仁川  
영주 等과 必要에 따라서 그 이외의 地域에 設置 환수 있도록  
承認해 달라는데 대하여 司會가 異議 手紙를 同款한가 異議 없다  
하여 通過 됨

# 17. 任員補選

## (1). 會長選出

司會가 會長과 副會長 두분이 辭表를 提出하였으니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鄭源道 理事長으로 부터 李源万 會長은 不可避한 事情으로 辭退하게 되었으니 崔致煥 議員을 會長으로 薦挙하고 副會長 두분에 對해서는 返任하는 勸諭에 對하여 全會員이 滿場一致로 贊成하여 通過 됨.

## (2). 理事長選出

司會가 理事長으로 부터 辭任書가 提出된데에 對하여 意見은 同致가 아니라 金鍾基 會員으로 부터 會長因과 理事長 그리고 대분의 理事가 辭表를 냈으니 全理事는 一括 辭表를 내도록 辭退勸告決議를 하는 意見이 있었고 鄭源道 會員으로 부터 辭表를 한번 사달까지, 辭表를 내라는 것은 道義上 不可하다는 意見이 있었음.

다음에 李康賢 會員으로 부터 잠시 停會하려는 要請으로 司會는 停會를 宣布함

(午後 1時 35分 會議中止)

(午後 1時 55分 繼續開會)

司會로 부터 續開會 宣稱하고 參席했던 全會員의 뜻에 따라 會費未拂入 任員인 崔龍植 會員에게 各심은 促求하기 위하여 停權 勸告를 宣布하고 다시 鄭源道 理事長外 4名의 理事 辭表 處理 手筈를 묻자 李東一 會員으로 부터 理事長은 비롯한 現理事陣의 補助金 獲得等 多大한 功勞가 있으므로 辭表를 全員 返任하고 留任시키자는 意見이 있었음

崔龍夏 會員으로 부터 理事長과 辭表를 受領한 理事들은 모두  
 一身上의 事情이 있는 것이니 일단 辭表를 受領하는 動議를 贊  
 成에 對하여 司會가 表決에 付한바 異議없다 하여 辭表를 受領한  
 司會가 理事長 選出方法은 全會員에게 同議한바  
 李秉賢 會員으로 부터 李東一 會員과 金鍾基 會員中에서 選出  
 하는 動議에 對하여 司會가 表決에 붙이자 李秉賢 會員外  
 全會員이 李東一 會員을 選出하여  
 司會는 李東一 會員이 理事長으로 選出된것을 宣布함.

(3). 理事 選出

司會가 理事 選出에 對하여 同議한바 鄭源通 會員이 新任  
 理事長에게 理事 選任을 알기라는 動議에 對해서 全會員  
 異議없다 하므로 司會는 動議대로 通過된것을 宣布함

14. 其他

司會는 받으신 張基泰 副會長님께서 本協會 發展을 爲해서  
 좋은 贊助을 해주신 予는 有하나 時同 關係로 會員에게 油印物로  
 傳達하기로 함

새로 選出된 任職은 다음과 같다

理事長	李	東	一
理 事	楊	澈	在
	金	永	春
	中	在	華

理事 李 龍 珠  
黃 魚 河

### 19. 閉會

司會外 呈請附議案件의 끝까지므로 閉會는  
宣言 訖

(午後二時 40分 散會)

有 添 : 1. 第2回定期總會資料  
2. 監查報告書

# 第二回定期總會資料

日時：1969. 12. 30.

場所：國會速記士養成所

## 目 次

---

1. 會 順
  2. 會務報告
  3. 決 算 書
  4. 70年度 事業計劃及 豫算書
  5. 支部設置承認斗件
  6. 任員補選
-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

## 第2回定期總會順

1. 開 會
2. 國民儀禮
3. 會長人事
4. 來賓祝辭
5. 成員報告
6. 前回會議錄通過
7. 會務報告
8. 1969年度決算承認及監查報告
9. 1970年度事業計劃書及予算案承認
10. 支部設置承認の件
11. 任員補選
12. 開 會

# 會務報告

1969. 5. 1.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의 우렁찬  
誕生이었던 第1回臨時總會 以後 그간 8次의  
理事會와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事業의 발자취를  
悼尾하는 이 자리에 그간의 協會運營經過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 1. 高等學校 特活時間 割愛에 대한 要請

1969. 6. 13.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教育監의 推  
薦을 받아 市內各男女高等學校를 對象으로 速記教育  
을 試圖한바 아직도 速記에 대한 理解, 認識, 必要  
性등을 切感하지 않은 現象에서 脫皮하지 못한채  
그 成果는 期待할 만한 것이 못되었으나 PR面에  
는 相當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을 自負하며 앞으  
로 加一層의 努力으로 實效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 2. 各界에 人事狀과 會議關係資料 蒐集配付

第1回臨時總會의 委任事項이며 法人設立後 本協會의 새로운 「이미지」의 扶植과 社會各界의 速記認識昂揚과 活用을 爲해 各公共團體에 法人設立의 人事와 아울러 事業紹介와 速記와 關聯된 設問欄을 마련하여 反響을 測定한바 아직도 未開地와 흡사한 現實이나 如何한 方法으로라도 이의 打開을 爲한 前進만이 있음을 示唆하며 會員各位의 보다 積極的인 協助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3. 資格審査 및 速記技能檢定委員會

速記人의 資質向上과 公信力의 向上을 圖謀함에 있어서의 速記技能檢定實施를 爲한 委員會構成을 第1次理事會(69. 5. 6)에서 마치고 數3次의 資格審査 및 速記技能檢定委員會를 設어 施行細則을

마련하여 第2次理事會(69. 6. 4)에서 銳意 檢  
討하여 議決하였고 權威있는 技能檢定証 發給을  
서두르고 있으며 委員名單은 다음과 같습니다.

委員長	韓	奉	永
委員	金	永	善
"	金	仁	寧
"	韓	鍾	烈
"	宋	博	文
"	崔	竜	植
"	梁	源	竜
幹事	金	仁	寧

#### 4. 補助金 獲得

本協會 当面課題의 하나인 補助金獲得은 科目新  
設이란 至難한 現實 아래에서나마 文公部에 350.  
萬원을 要請, 企院의 最終 查定時까지 國會事務

處 權孝燮委員局長님을 비롯한 여러 人士들의 積極  
的인 協贊으로 迂余曲折 끝에 마침내 100 余萬圓의  
補助가 確實視 되었읍니다.

이를 契機로 더욱더 밝은 未日의 協會에 無窮한  
發展있기를 바라며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會務報告를  
마치겠읍니다.

1969年 12月 日

理事長 鄭 源 道 . . .

# 1969年度決算書 (1969.4.4~1969.12.23)

收 入		金 額	備 考
款	項		
基本收入	入会費	2,100	
	月会費	66,000	
事業收入	賛助金	160,000	
雑收入	銀行決算利子收入	692	
移越金	前年度移越金	173,042	
	計	401,834	

支 出		金 額	備 考
款	項		
会議費	定期・臨時總會費	29,840	
	理事会費	17,750	
經常費	經常費	50,305	
	通信費	4,390	
辦公費		36,430	
予備費		131,795	
	計	270,510	
	現金残高	131,324	
	總 計	<u>401,834</u>	

~7~

# 監査報告書

協會定款第16條의 規定에 依據 1969.12.23  
現在 本協會의 財政狀況을 監査한 結果 決算書와  
相違없음을 報告합니다.

1969年 12月 30日

監事 金 仁 寧

“ 高 在 欽

# 1970년도 사업계획서

1970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당협회가 정부보조단체임을 감안하여 전년도 보다 사업을 확장,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협회발전에 기여하리라고 확신, 전년도의 6개 (계속) 사업에다가 기계속기 연구를 추가 다음과 같은 7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1. 회지발간 (계속)
2. 무료공개속기 강습회 (계속)
3. 속기 전시회 (계속)
4. 속기 법식연구 (계속)
5. 자격검정 시험 ( " )
6. 속기경기대회 ( " )
7. 기계속기 연구 (신설)

# 기본계획

## 1. 회지발간 (월보) (계속)

(1) 목적 : 종래의 회지발간 방법을 폐지하고  
 속기계를 월간으로 발간하여 속기계의  
 동향과 회원들의 실태를 신속히 회원들  
 에게 알리고 국회를 중심으로 의원들  
 과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사  
 를 실음으로서 (속기를 토대로) 속기에  
 대한 P.R 과 속기의 수요처 개발에 이  
 바지함으로서 명실상부한 협회와 지판지  
 가 되게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 판 : 선전부

(3) 발간에 대한 세부계획은 이사회에서 정  
 한다.

## 2. 무료공개속기강습회 개최 (계속)

(1) 목적 : 단기간의 무료공개강습을 실시

하위 속기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속기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속기 인구의  
증대에 목적을 둔.

(2) 주 관 : 선전부

(3) 강 사 : 채택된 법칙에서 초빙

(4) 방 법 :

가. 단기간 공개속기강습 (계속)

    나. 기간 및 회수

    ① 제6회     1970년 1월 ~ 2월사이.

        (3주간)

    ② 제7회     1970년 7월 ~ 8월사이

        (3주간)

    다. 대학교 및 고등학교 대상 공개속기강습

        (신설)

        희망교에 강사파견

3. 속기전시회 (계속)

~//~

(1) 목 적 : 속기학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을 전시함으로서 속기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자체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 간 : 1970년 7월중 1주일

(3) 주 관 : 사업부·선전부 (세부계획은 이사  
회에서 정한다)

#### 4. 속기법식연구위원회 (계속)

(1) 목 적 : 시대가 변천되고 발전됨에 따라  
언어의 속도가 빨라지므로 속기문자의 개량  
은 우리 속기계에 주어진 큰 과제이므로  
이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구 성 : 협회 가입법식중에서 각법식에 1  
인 이상의 연구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 1인  
과 간사 1인을 둔다

(3) 주 관 : 연구위원회

(4) 연구방법 : 이는 구성된 연구회에서 정한다.

#### 5. 자격검정시험

(1) 목적 : 협회의 자격심사 및 기능검정기준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숙기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시키는데 있다.

(2) 개최일시 : 1970년 3월중

(3) 주 관 : 자격심사위원회

세부계획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6. 숙기경기대회 (계속)

(1) 목적 : 숙기에 대한 일반의 올바른 인식과 숙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방 법 : 개인 경기

(3) 개최일시 : 1970년 4월중

(4) 주 관 : 사법부

(세부계획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7. 기제속기 연구위원회

(1) 목 적 : 기제속기의 연구 및 개발

(2) 구 성 : 전문위원 1인과 5명의 위원으로  
서 구성한다.

(3) 주 관 : 연구위원회

세부계획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1970년도 수지예산(안)

수	입	지	출
기본수입	126.000 <sup>원</sup>	회의비	66.000 <sup>원</sup>
찬조금	3,700.000	경상비	670.180
사업수입	1,635.000	수용비	708.000
보조금	1,080.000	사업비	4,935.800
이월금	131.324	판공비	120.000
		예비비	172.344
계	6,672.324	계	6,672.324

수입지부

관	항	목	수입액	산출근거
기본수입			126,000	원
	월회비		120,000	$10,000\text{원} \times 12\text{월} = 120,000$
	입회비		6,000	$300\text{원} \times 20\text{명} = 6,000$
찬조금			3,900,000	
사업수입			1,635,000	
	회지발간		600,000	
	광고수입		600,000	$50,000\text{원} \times 2\text{회} = 600,000$
무요강습비	→		1,000,000	
	교재대	→	1,000,000	$1,000\text{원} \times 500\text{명} \times 2\text{회} = 1,000,000$
자격검정시험	→		35,000	
	수험료	→	35,000	1급~2급 $300\text{원} \times 50\text{명} = 15,000$ 3급~5급 $200\text{원} \times 100\text{명} = 20,000$
보조금			1,080,000	
이월금			131,324	
	전년도이월금		131,324	
합	계		6,802,324	

지출지부

과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회의비			11,000	원
	정기총회		36,000	
	회의비		36,000	3,000원 x 12회 = 36,000
경상비			670,180	
	사무비		670,180	
		인건비	396,000	사무국장 25000원 월 = 300,000 사환 8,000원 x 12월 = 96,000
		여비	36,000	3,000원 x 12회 = 36,000
		물품구입비	226,180	집기-거 100,000원 전화구입 90,180원 사무용품 3,000원 x 12월 = 36,000
		통신비	12,000	1,000원 x 12월 = 12,000
수용비			703,000	
	임대료		660,000	사무실 보증금 300,000원 월세 30,000원 x 12월 = 360,000
	공과금		48,000	4,000원 x 12월 = 48,000

과	항	목	금액	산출근거
사업비			4,935,800	
	회차발간		1,113,800	
		인건비	660,000	2인 $\times 20,000 \times 2 \text{회} = 480,000$ (포장사) 1인 $\times 15,000 \times 2 \text{회} = 180,000$ (교정사)
		원고료	384,000	100원 $\times 320 \times 2 \text{회} = 384,000$ 원
		인쇄비	619,800	8면 $\times 2,800 \times 2 \text{회} = 224,800$ (조판) 800원 $\times 4 \times 2 \text{회} = 38,400$ (지정판) 1,000원 $\times 5 \times 2 \text{회} = 60,000$ (인쇄 기본) 1,650원 $\times 5 \times 2 \text{회} = 59,000$ (문지) 300원 $\times 2 \text{회} = 2,600$ (과외) (100) 30원 $\times 200 \times 2 \text{회} = 72,000$ (동판) 30원 $\times 200 \times 2 \text{회} = 72,000$ (동판)
	무료강습비		1,140,000	
		임대료	200,000	1,000원 $\times 5 \times 20 \times 2 = 200,000$
		강사수당	120,000	300원 $\times 1 \times 10 \times 20 \times 2 = 120,000$
		교재대	300,000	300원 $\times 500 \times 2 \text{회} = 300,000$

	연료비	310,000	$25,000 \text{ 원} \times 10 \text{ 개} = 250,000$ (난로 구입) $600 \text{ 원} \times 20 \times 5 \text{ 모살} = 60,000$ (석유)
	광고비	160,000	$20,000 \text{ 원} \times 4 \text{ 회} \times 2 \text{ 회} = 160,000$
	예비비	50,000	$25,000 \text{ 원} \times 2 \text{ 회} = 50,000$
수진시회		780,000	
	임대료	70,000	$10,000 \text{ 원} \times 7 \text{ 월} = 70,000$
	재료및응품비	80,000	최고지 포스타칼라 합판외 필요한 응품
	인쇄비	100,000	초청장(등사. 피봉 500매) 프로그램(등사 20페이지 5000원)
	사진비	20,000	현상료 확대료
	인건비	250,000	미술, 도안, 차드, 실배장식 목공인부 등.
	자료수집비	100,000	국내, 국외
	광고비	80,000	$20,000 \text{ 원} \times 4 \text{ 회} = 80,000$
	활동비	50,000	준비 위원
	예비비	30,000	
기계속커연구		780,000	

과	항	목	금액	산출근거
		자료수집비	300,000	국내, 국외
		전문위원수당	360,000	$20,000 \times 12 \text{월} = 360,000$
		위원수당	60,000	$500 \times 5 \text{인} \times 24 \text{회} = 60,000$
		인쇄비	30,000	
		예비비	30,000	
	숙기합식연구		234,000	
		자료수집비	100,000	국내, 국외
		위원수당	84,000	$500 \times 1 \text{인} \times 24 \text{회} = 84,000$
		용지및 인쇄비	30,000	
		예비비	20,000	
	자적검정시험		198,000	
		임대료	30,000	$10,000 \times 3 \text{회} \times 1 = 30,000$
		용지및인쇄비	30,000	$30,000 \times 1 \text{회} = 30,000$
		광고비	80,000	$20,000 \times 4 \text{회} \times 1 \text{회} = 80,000$
		차절비	18,000	$300 \text{원} \times 60 \text{인} \times 1 \text{회} = 18,000$
		예비비	20,000	
	숙기정기대회		160,000	

	임대료	10.000	$10.000 \text{ 원} \times 1 \text{ 회} = 10.000$
	용지및인쇄비	15.000	$15.000 \text{ 원} \times 1 \text{ 회} = 15.000$
	광고비	80.000	$20.000 \text{ 원} \times 4 \text{ 회} = 80.000$
	상장및상동비	30.000	$30.000 \text{ 원} \times 1 \text{ 회} = 30.000$
	채검비	15.000	$300 \text{ 원} \times 50 \text{ 인} = 15.000$
	예비비	10.000	
판공비		120.000	$10.000 \text{ 원} \times 12 \text{ 회} = 120.000$
예비비		192.344	
합	계		6.612.324

$$\begin{array}{r}
 135000 \\
 - 270000 \\
 96000 \\
 - 2410640 \\
 120000 \\
 128000 \\
 \hline
 3,1159,600
 \end{array}$$

②

$$\begin{array}{r}
 903000 \\
 137500 \\
 558000 \\
 494140 \\
 200000 \\
 430000 \\
 75000 \\
 \hline
 2420640
 \end{array}$$

③

③